

의안 검토 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견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희 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본 동의안은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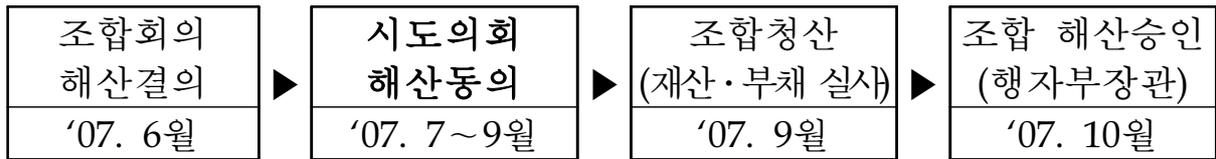
- 개정 「전자정부법」(2007. 7. 4. 시행)에서 그간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어 온 자치정보화조합을 「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자 기존의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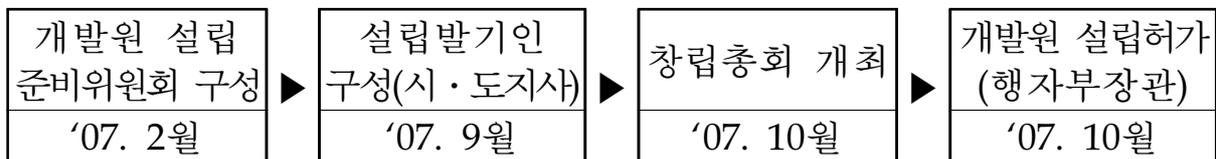
- 2003년 3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자정부법」 제50조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던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고자 함.
-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제1항에 의거 조합 구성원인 시·도 의회의 해산동의가 필요함.

※ 조합해산 및 개발원 설립절차

■ 조합 해산절차



■ 개발원 설립절차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중앙·지방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중복투자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 12월 1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설립되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조합인 “자치정보화조합”을, 개정된 「전자정부법」과 「지방자치법」 제164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산하고,

“자치정보화조합”의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 파견공무원 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포괄 승계하며,

“자치정보화조합”이 수행하던 자치단체 공동사무 등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위탁사무,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하려는 것임.

○ 본 동의안 검토결과

기관의 성격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 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정보화 수요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치정보화조합이 갖고 있는 자치단체조합의 한계 극복 및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합을 해산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대전광역시의 분담금이 매년 증액되는 부분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